

4 애완동물 관련 유통사료의 품질관리 실태조사 결과



김현열 팀장
(서울시청 축산위생팀)

최근 애완동물(애견·고양이 등)의 사육가정이 매우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애완동물의 역할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반려동물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그러나 애완동물의 사료는 식품을 능가하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료관리법의 잘못된 이해로 무분별한 사료의 유통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사료관리법 관련규정이 개정되기 전 관련법령을 적용시키기 어려워 품질관리 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애완동물사료의 품질관리 강화로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수요 양축가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유통사료에 대한 자체 계도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았다.

I. 애완동물 관련 사료제조(수입) 업체현황

2003년 9월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시 관내에 애완동물(애견, 고양이 등) 관련 국내산 제조업체는 없는 반면 사료 수입업체는 61개업체에 834개 품목으로서 애완동물 관련 사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시마다 품질검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별 어떠한 생산조건에서 안전하게 관리되어 생산되었으며 성분별 함량이 등록성분량에 적합한지 또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포장지 등의 표시기준이 적합한지 등 애완동물의 사료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II. 관내 애완동물 사육현황 : 22만두(애완견 17만두, 고양이 5만두) 추정



Ⅲ. 애완동물용 사료 품질관리 홍보 및 계도

우리시에서는 백화점 등 1,297개의 애완동물 관련 사료판매업체(대형할인 매장 및 슈퍼, 동물병원, 애견센터 등)를 대상으로 애완동물 사료품질관리에 대하여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결과 수입사료 등의 포장지의 표시기준 위반 및 미등록사료의 유통 등과 같은 위반유형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완동물 관련 배합사료 50건을 수거하여 등록성분 및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배율이 24%나 되어 애완동물사료의 품질관리가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한 품목에서 3개 성분이 부족한 제품도 있었다.

이는 다른 사료와 달리 사료관리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품질관리계도〉

- 기간: 2003. 6. 2~6. 30
- 계도실적: 총 1,297개소
 - 백화점 16, 동물병원 565, 대형할인점 63, 슈퍼마켓 412, 애견센터 241 등
- 계도방법: 현지출장 계도 및 안내문 배부
- 계도내용
 - 성분미등록사료 유통 및 사료의 표시기준 등 위반제품 취급 판매행위
 - 임의 재포장(소분) 판매 행위
 - 기타 사료관리법규 위반행위 등
- 위반유형
 - 제조 및 수입업체에서 생산(수입)하는 일부사료의 경우 포장용지에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 위반 및 성분미등록 유통 행위
 - 수입업체와 소분계약 없이 일부사료판매업소에서의 재포장(소분)판매 행위
 - 사료공정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료의 제조 및 수입사료 유통

〈유통사료 수거검사 실시〉

- 애완동물용 배합사료 50건 수거검사
- 수거품목: 50품목(애견용 43, 고양이용 4, 어류용 2, 햄스타용 1)
 - 검정의뢰: 2003. 6. 24
 - 검정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검정결과
 - 위배건수: 12건(개사료 10, 고양이사료 1, 햄스타사료 1)
 - 위배성분: 조희분 초과(3), 칼슘 부족(6), 조섬유 초과(3), 조단백질 부족(3)
 - ※ 위배율(24%)

Ⅳ. 유통사료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시

애완동물 관련 유통중인 사료의 품질관리 계도와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무등록사료의 유통 및 표시기준 위반, 등록성분의 불일치 등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 112개 업체중 20개 업체에 24건이 위반되는 등 문제점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사료성분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한 사료를 유통 판매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다.

〈지도단속 실시〉

- 기간: 2003. 7. 7~7. 16(기간 중 7일간)
- 점검대상
 - 애완동물사료 전문취급업소: 애견센터, 애견용품점, 동물병원
 - 대형 유통업체(백화점, 대형할인점 및 슈퍼마켓) 등
- 점검내용



- 성분미등록사료 취급판매 여부
- 사료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판매여부
- 과대포장, 허위·과대광고 및 동사료 취급여부
- 임의 재 포장(소분)행위 등 사료관리법 위반사항
- 점검방법
 -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합동단속 실시
- 점검반편성: 2개반 6명(공무원 4, 소비자단체 2)
- 점검결과
 - 점검업소: 총 112개소
 - 백화점 12, 할인점(슈퍼) 37, 애견관련업소 63
 - 위반건수: 20개 업체 24건
- 위반내용
 - 성분미등록: 5개 업체 6개 품목
 - 표시기준 위반 등: 15개 업체 18개 품목
 - ※ 표시기준 위반 유형
 - 성분등록번호 미표시, 사료명칭·용도 표시위반, 제조원·수입원 미표시, 임의 재포장 행위, 제조일자 표시위반, 허위과장 표시 등
- 검정결과 위배사료 및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위배업체에 대한 검정결과 통보
 - (사료관리법 제21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자가품질검사 실시 후 재검사 신청
 - (법 제21조제2항 및 규칙 제28조제2항)
 - 재 검정 대상사료에 대하여 재 검정 의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재 검정결과 위배 시 행정처분
 - (영업의 일부정지 1월 또는 과징금)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사료성분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한 사료를 유통·판매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 ※ 타시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시도로 이첩조치

V. 문제점

애완동물관련 사료의 품질관리 제도 및 지도단속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법령 이해부족 및 규정적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무분별하고 자유로운 수입유통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문제점 분석〉

- 사료의 유통에 있어서 대다수 제조(수입)업체에서는 관심을 갖고 유통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사료관리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규 위반사례 발생.
- 제조 또는 수입된 후의 사료는 누구나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음에 따라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관리가 되지 않음.
- 불량사료를 취급하는 사료판매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통사료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사료성분등록 및 표시기준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사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문 시 거부반응(유통증인 사료판매업소)
- 일부 애완견 사료 및 용품 등을 사료용으로 수입하여 통관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사료성분등록을 할 수 없어 민원야기

VI. 개선방법

위에서 분석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볼 때 안전성 및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품질확보를 위한 홍보와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애완동물사료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스스로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우수한 품질의 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 성분등록 실시 등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당부하며 아래와 같이 행정적인 개선방안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다.

□ 법규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하여 성분등록시 사료관리법규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안내,



지도점검시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료관리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안전하고 우수한 애완동물사료의 유통으로 애완동물 및 소비자 모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한, 기 조사된 사료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시에서는 사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서한을 발송하여 사료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 사료공정서 등 개정

모든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의거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성분등록을 필한 후 제조 및 판매 등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뿐만 자가품질검사도 3~6개월마다 1회 이상 등록성분 및 중금속, 살모넬라 등 안전성관련 성분까지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애완동물사료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영양보충용, 간식용 등 목적도 다양하여 기존의 사료공정서 만으로는 적용규정이 적합하지 않아 등록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이번 품질관리 실태를 토대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안전한 애완동물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애완동물용 사료용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성분등록 할 수 있도록 사료공정서 개정을 지난 6월에 건의하여(비스켓, 육포, 소시지, 개껌, 영양보충제 등) 금년 9월 23일 사료공정서가 개정됨으로서 영양보충제 등 모든 애완동물사료의 등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애완동물 산업은 최근 급성장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급성장 기조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산업발전에 발맞춰 애완동물 산업에서 비중이 높은 애완동물용 사료 또한 포물러에 맞는 안전한 생산·제조와 올바른 유통 확립을 토대로 하여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애완동물용 사료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여러 행정 조치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정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 다양한 품목의 사료가 성분등록이 되고 품목은 늘어나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부족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인력로나마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유통사료의 품질관리 실태조사에 나서고 뿐만 아니라 사료공정서에 맞지 않거나 등록이 필요한 사료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계도활동으로 유통사료의 안전한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㉟